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256
----------	------

2021년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성흠제 의원(찬성자 9명)

나. 발의일자 : 2021년 2월 16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4월 06일

라. 상정결과 :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4월 30일,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성흠제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우대)에 따라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무료관람)에 따른 무료관람 가능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해 병역명문가를 지정하는 취지와 활성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포함코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가. 시립미술관 무료관람 가능 대상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포함토록 함. (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병역법」,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없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정욱)

### 가. 개정안의 취지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우대)에 따라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의 감면을 통해 국민들이 병역이행에 자긍심을 갖고 묵묵히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이 존중받고 우대 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
-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3대 가족<sup>1)</sup>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온 국민의 귀감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1) 3대 가족 :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 군복무자 1명 이상 포함)

하는 사업으로 병역명문가에게는 증서와 패, 병역명문가증을 교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각종 민간시설의 이용료 면제·할인, 병원 진료비 할인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추진경과>

연도	주요내용
'04년	•제1회 병역이행명문가 시상식 개최(국방부장관 주관)
'08년	•병역증명서 '병역명문가'표기 발급
'09년	•병역명문가증 발급
'10년	•'병역이행명문가'를 '병역명문가'로 명칭 변경
'11년	•병역명문가 시상식 정부행사(국무총리 참석)로 격상
'12년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확대 : 비군인 신분 6·25 전쟁 참전자 포함
'13년	•병역명문가 사업 법적근거 마련 - 병역법 제82조 신설(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확대 -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 3대째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
'15년	•병역명문가 청와대 초청 격려행사 실시
'17년	•병역명문가 스토리 가문 표창 신설
'18년	•정부포상 확대 : 대통령표창 1 → 2, 국무총리표창 2 → 3 •병역명문가 선정 방법 등 개선(10월 ~ ) - 선정 시기 : (종전) 연 1회(3월) 선정 → (개선) 매월 선정 - 선정 방법 : (종전) 방문, 우편 등 → (개선) 병무청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19년	•병역명문가 모바일 서비스 구축 - 병역명문가 “앱” 구축 - 카카오 플러스친구 운영

## 나. 개정안의 내용

- 「병역법」,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각종 민간시설의 이용료 면제·할인, 병원 진료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무료관람)에 따른 무료관람 가능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해 병역명문가를 지정하는 취지와 활성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 해 줄 수 있다.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무료관람)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p> <p>1. ~ 9.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u>10.</u>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p> <p>② (생략)</p>	<p>제9조(무료관람) ①----- ----- ----- ----- ----- ----- 1. ~ 9. (현행과 같음) <u>10.</u>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u>11.</u> ----- ----- ② (현행과 같음)</p>

-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규정한 것은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제공하는 것이 입법취지인 바,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설 이용료의 감면제공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병역명문가 선정현황>

구분	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선정 (가문)	7,631	1,236	1,017	741	714	492	560	466	497
병역 이행자 (명)	38,665	6,289	5,222	3,820	3,779	2,670	2,932	2,490	2,520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545	301	302	192	147	132	73	92	84	40
2,642	1,444	1,426	892	679	587	325	400	367	181

###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 사회적 예우**

- 병역명문가 패·증서 교부,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게시
-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 현충일, 광복절, 국군의 날 등 주요 국가 행사贵宾으로 초청
- 병역판정 옵부즈맨, 정책자문위원 등 병무행정 수행과정 참여




병역명문가패    병역명문가 증서

**▶ 각종 시설 이용 지원**

- 국·공립, 지방자치단체, 민간시설 이용료 할인 및 감면 등
- \* 공·농원, 휴양림, 박물관, 미술관, 병·의원 등 / 입장료, 관람료, 진료비 등 면제·할인
- 지방자치단체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은행 금리 우대, 주요 리조트 이용 할인, 군 복지시설 이용 등

- 병무청을 중심으로 국가는 선정된 병역명문가에게는 증서와 패를 교부하는 등의 사회적 예우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각종 민간 시설의 이용료 면제·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병역명문가의 숭고한 희생에 걸맞은 우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음.

#### 다. 종합 의견

- 현행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무료관람)는 「병역법」,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에게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립미술관 관람에 대한 혜택 규정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무료관람) 범위에 병역명문가를 추가 하는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활성화와 2015년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병역명문가의 숭고한 희생에 걸맞은 우대 방안을 마련하는 점에서 해당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노재윤	02-2180-8118

의안번호  
2256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성흠제 의원	2021.2.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 우대조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무료관람대상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추가함				
추진경과	○ ○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관람을 지원하는 취지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대응방안					
상 임 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시립미술관 총무과	팀장	김기용(☎2124-8812)	담당	김지은(☎2124-8817)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함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56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16일  
발 의 자 : 성함제 의원(1명)  
찬 성 자 : 김경우, 김재형, 문장길,  
이상훈, 임종국, 전석기,  
최 선, 최응식, 황규복  
의원(9명)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우대)에 따라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무료관람)에 따른 무료관람 가능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해 병역명문가를 지정하는 취지와 활성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포함코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시립미술관 무료관람 가능 대상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포함토록 함. (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병역법」,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의 호 번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무료관람)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p> <p>1. ~ 9.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u>10.</u>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p> <p>② (생략)</p>	<p>제9조(무료관람)①-----</p> <p>-----</p> <p>-----</p> <p>-----</p> <p>-----.</p> <p>1. ~ 9. (현행과 같음)</p> <p><u>10.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u></p> <p><u>11.</u> -----</p> <p>-----</p> <p>② (현행과 같음)</p>

문서번호	2021012900000028
------	------------------

##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성흠제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민향식 팀장 노이안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1.29	
회신일 : 직접입력	내용문의 : 010-2326-1900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예산분석팀장 민향식

분석관(주무관) 노이안

☎ 010-2326-1900

e-mail : 78901@seoul.go.kr